

# 장애학생지원 운영 규정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8.3.1		16		
2	2023.5.8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장애학생지원 운영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우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5. 8.>

**제2조 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하였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.

## 제 2 장 장애학생 지원부서 <개정 2023. 5. 8.>

**제3조 (설치)** 장애학생 지원부서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교내생활에 대한 지원업무로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하며, 필요 시 유관부서의 협조를 상시 요청할 수 있다. [본조 전문 개정 2023. 5. 8.]

**제4조 (업무)** 장애학생 지원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 교육활동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
4. 교직원 중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[본조 전문 개정 2023. 5. 8.]

## 제 3 장 특별지원위원회 <개정 2023. 5. 8.>

**제5조 (설치)**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[본조 전문 개정 2023. 5. 8.]

**제6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 중 교무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1.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, 학생 복지 등 관련 교직원
  2.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
  3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가
-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,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

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[본조 전문 개정 2023. 5. 8.]

**제7조**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
2.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
3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[본조 전문 개정 2023. 5. 8.]

**제8조** (회의)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** 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학생지원팀 직원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 [본조 전문 개정 2023. 5. 8.]

**제10조** (회의록 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11조** (세부 사항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되,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
- ②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23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.